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-[illegible]호

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

근로능력이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「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」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5.

광 진 구 청 장

○ 모집기간 : 2022. 5. 24.(화) ~ 5. 30.(월) (평일 09:00~18:00)

○ 사업기간 : 2022. 7. 4. ~ 11. 30.(※ 사업별 상이, 참여기간 참조)

○ 모집인원 : 19명

연번	세부사업명	일 근로시간	일 임금	모집 인원	참여기간
1	일자리발굴단 운영	6시간	54,960원	6	2022. 7. 4. ~ 11. 30.
2	칼갈이·우산수리센터 운영	5시간	45,800원	3	
3	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활성화 지원	5시간	45,800원	5	2022. 7. 4. ~ 10. 31.
4	광진숲나루 및 중랑천 유해식물 제거	5시간	45,800원	5	

※ 사업별 자격(우대)조건 및 운영사항

- 일자리발굴단 :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,
  (근무지) 일자리센터, 성동광진고용플러스센터 및 화상면접체험관(경제허브센터)
- 칼갈이·우산수리센터 : 칼갈이 및 우산수리 가능자

○ 임금 및 근로여건

- 주 5일, 1일 5·6시간(사업별 상이)
- 시급 9,160원(중식비 5,000원 별도), 주차·연차 수당, 4대보험

○ 참여자격

- 만18세 이상 광진구민(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 포함)으로,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%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
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(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)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
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
※ 참여기간 제한 해당 직접일자리 사업
공공근로사업, 방역일자리사업, 어르신일자리사업,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
③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를 초과하거나(1인 가구는 120% 초과), 4억원 이상의 재산(토지·건축물·주택·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 보유 가구의 구성원
④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, 취업지원프로그램*을 거치지 않은 자
*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
⑤ 1세대 2인 참여자(선발 배제)
⑥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의 배우자 및 자녀
*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의 경우 허용
⑦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,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○ 신청접수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

○ 신청서류 ※신분증 지참

- 필수 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선택(해당자) :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(증빙서류 제출시에 한해 취업취약계층 인정)

<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>

①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, 1인 가구는 120% 이하,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(구직신청일 기준) 장기실직자 ④ 결혼이민자
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
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

○ 합격자 발표 : 2022. 6. 27.(예정) ※ 합격자 개별통보(유선 또는 문자)
(대기자 및 배제자는 별도의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.)

○ 문 의 처 :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(☎450-7057) 및 동주민센터

○ 유의사항

-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환수함
- 제출한 신청서류 등은 구직자의 반환 요구 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함
- 선발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격이 변동(상실)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 상담 필요
-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